

## 2021년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법무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3차)

2021년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법무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3차)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전라북도지사

### I. 선발예정인원

채용구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
			총계	남여공통	
합계			1	1	
경력경쟁채용 이하 '경채'	소방경	법무	1	1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필기시험 면제)

### II. 시험일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원서접수	시험구분	장소공고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 접수기간 10.27.(수) 09:00 ~ 10.29.(금) 18:00까지  ◇ 취소기간 10.27.(수) ~ 10.31.(일)	인·적성검사	11.2.(화)	11.9.(화)	11.11.(목)
	서류제출		장소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체검사 실시 후 자격요건의 서류와 신체검사서를 인·적성검사 시 제출	
	신체검사서 제출			
	면접시험	11.11.(목)	11.16.(화)	11.18.(목)

※ 서류전형 결과는 최종합격 시 반영하며, 인·적성검사는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III. 응시자격

#### □ 응시자격 등 기준일

채용구분	종류	기준일(보유 등)
경채(법무)	응시 결격사유 등	최종시험 예정일
	응시연령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
	경력요건의 자격·면허	최초시험 예정일(면접시험일)
※ 모든 자격(면허)는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요건으로서의 자격보유 효력이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 응시자격은 박탈되고 합격결정을 취소 함		

#### □ 응시 결격사유 등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 다음 각 호의 관계법규에 따라 응시할 수 없음 【붙임 1】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 복수국적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국적법11조의2제2항)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 응시연령

채용구분	계급	연령	해당 생년월일
경채(법무)	소방경	23세 이상 40세 이하	1980.1.1. ~ 1998.12.31.
※ 다음 관계법령의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자 포함)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연장기간	1세	2세
			2년 이상
			3세

□ 신체조건

○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붙임 2】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불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 【붙임 3】

□ 거주지 제한 : **없음**

□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사항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다만, 해당법령<sup>1)</sup>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은 응시가능

○ 자격(면허) 요건

채용분야	응시자격 등
법무	▶ 아래의 1~2번 요건 중 <u>하나</u> 를 충족하여야 함 1. (자격)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사법연수원 수료자) 2. (자격)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1)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9조 제1항

## IV.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1. 10. 27.(수) 09:00 ~ 10. 29.(금) 18:00
  -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 취소기간 : 2021. 10. 27.(수) ~ 10. 31.(일)
  -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또는 취소 가능하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취소기간에는 응시 취소만 가능 함
-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
- 사진등록 (6개월 이내 촬영)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 ※ 사진파일 확장자가 다른 경우 사진을 볼 수 없거나 인쇄되지 않음
  - 응시자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일반 스냅사진,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사진교체 불가
  - 응시원서 등록사진은 최종합격 후 동일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원판 보유 사진으로 등록 후 보관하여야 함
- 접수확인 : 응시생 원서접수 완료 후 확인(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료 출력 기간 : 2021. 11. 2.(화) 이후
  - ※ 매 시험응시 시 반드시 지참하도록 할 것

### □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 7,000원(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추가비용 발생)
  -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 원서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포기로 처리함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 시 납부 응시수수료 환불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절차에 따라 진행)

## V. 신체검사(추후 장소공고문 참고)

### □ 신체검사

- 대 상 자 : 원서접수자 전원
- 제출기한 : 인·적성검사 시 제출
- 검사방법 : 소방청 지정 종합병원 **【붙임 4】** 중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따라 실시 후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수수료 응시자 부담)
- 제출서식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서식 1】**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불인정
-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붙임 2】**
- 불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붙임 3】**

#### <신체검사 주의사항>

- ◇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실시한 **종합병원에서 압인 또는 계인 처리**
- ◇ 신체검사서는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 ◇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신체검사 서류 제출 첫째날)
  -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
    - \* 색각자는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응시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색각경 검사결과지를 신체검사 병원에 제출하여 신체검사 판정을 받으시기 바람 → 색각경 검사 병원 **【붙임 5】**
  -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등 부정합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 신체검사 결과는 전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한 신체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음
  - ※ 신체검사 판정보류 등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결과는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전일까지 제출

## VI. 서류제출 및 인·적성검사(추후 장소공고문 참고)

### □ 서류제출

- 대 상 자 : 원서접수자 전원
- 제출기한 : 인·적성검사 시 제출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가 적합한 자
  - ※ 서류전형의 결과는 최종합격자 결정 시 반영

□ 인·적성검사

- 대 상 자 : 원서접수자 전원
- 검사일자 : 2021. 11. 9.(화) ※ 검사장소 및 일정은 11. 2.(화) 별도 공고
- 검사결과 : 면접위원회에 사전 제공되어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VII. 면접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자 : 신체검사 합격자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인·적성검사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증
- 평가요소

단계	평가요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5 참고 【붙임 6】

○ 합격자 결정

- 합 격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 불합격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 VIII. 최종합격자 결정

### □ 최종합격 기준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성적 100%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IX. 유의사항

### 1. 공통사항

- 신분증 미지참 응시자는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합니다.
  - 인 정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불인정 :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

※ 응시표 출력 후 → 모든 시험절차 지참
- 공지사항(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북도청 및 전북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든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험시행기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신체검사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 후 채용 시험 지원 가능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은 반드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는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응시자 본인이 직접 검사예약 후 방문하여 검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분증 등 준비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험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최종합격자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제외)

◆ 채용시험(서류, 면접 등)

- 문의처 : 전북도청 총무과 공무원채용팀
- 연락처 : 063-280-2307

◆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접수증 및 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관련

- 문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연락처 : 1522-0660

- [붙임] 1. 응시결격 사유 등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5. 소방공무원 색각검사 지정 종합병원
  6. 소방공무원 면접실시 기준
  7.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서식] 1.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붙임1**

**응시결격 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 ◆ 공무원임용령

###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 ◆ 국적법

###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붙임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수치로 기재)
색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수치로 기재)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수치로 기재)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붙임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별표3

구분	내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분	내용
7. 생식비뇨기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u>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u>
13. 눈	<p>가. <u>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u></p> <p>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p> <p>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p> <p>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p> <p>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는 제외)인 경우</p>
14. 정신 계통	<p>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p> <p>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p> <p>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p> <p>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p> <p>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p>
15. 혈압	<p>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p> <p>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p>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붙임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2층 건강증진센터	02-2276-7155	
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15층 국가건강검진센터	1577-0075	
3	경찰병원(국립)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3층 건강증진센터	02-3400-1365	
4	동아대학교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3가)	051-240-5310	
5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051-607-2179	
6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051-240-7830	
7	부산성모병원(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용호동)	051-933-7672	
8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051-610-9865	
9	학교법인)동의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 (양정동)	051-850-8763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051-601-6141	
11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삼덕동 2가)	053-200-5791	
12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신당동)	053-258-4171	
1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대명동)	053-650-3534	
14	대구의료원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중리동)	053-560-7387	
15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신암동)	053-940-7025	
16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대명동)	053-620-3180	
17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033~4	
18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뇌병원 3층 건강관리센터	1544-9004, 내선번호2	
19	광주보훈병원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산월동)	062-602-6114	
20	충남대학교병원(국가건강검진센터)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042-280-8535	
21	대전보훈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신탄진동)	042-939-0407	
22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울산대학교병원(전하동)	052-250-7000	
23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052-241-1114	
24	의료법인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171번길 13(신정동)	052-259-5000	
25	아주대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1688-2118, 2번선택	
26	동수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031-210-0285, 0777, 0294	
27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031-820-3330	
28	강원대학교병원(종합병원)	강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효자동)	033-258-2448, 9274	
29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상급종합병원)	강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일산동)	033-741-1670~2	
30	강릉아산병원(종합병원)	강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033-610-3698	

##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생명의삶터, 천년전북!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비고
31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사직동)	043-279-2300	
32	청주 성모병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	043-219-8666	
33	천안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041-570-7200	
34	공주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	041-570-1111	
35	서산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041-689-7000	
36	홍성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041-630-6114	
37	보령 아산병원	충남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136	041-930-5114	
38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063-250-1295	
39	예수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중화산동)	063-230-1515	
40	대자인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	063-250-8770	
41	목포시의료원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061-260-6500	
42	성가롤로병원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061-720-2000	
43	안동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271	
44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054-468-9759	
45	포항세명기독병원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054-289-1860	
46	김천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054-429-8212	
47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360-1000	
48	의료법인보원의료재단 경희의료원교육협력 중앙병원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94-8 (외동)	055-330-6000	
49	한일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지1,1~5,7층 (충무공동)	055-759-7777	
50	창원경상대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055-214-2050	
51	창원파티마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055-270-1350	
52	한마음창원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21	055-268-7891	
53	제주한라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064-740-5359	
54	중앙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	064-786-7282	
55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064-717-1580	

**붙임5**

**소방공무원 색각검사 지정 종합병원**

구분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1	경찰병원(국립)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02-3400-1269
2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051-240-7320
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길 82	031-787-2114
4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114
5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360-1446

-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 색각 관련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위 병원에서 색각경검사(일명 아노말로스코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에 명시한 종합병원 외에 색각경검사가 가능한 종합병원이라면 색각 관련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6**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요약)※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5**

□ **면접시험 방법**

① 제1단계 면접(집단면접)

- 10명 내외로 1개조 편성
- 조별 순차적으로 면접대기실에 입실
- 면접번호 부여, 면접번호 패용(조별 절반씩 A, B로 구별)
- 각 조별 면접시험장 동시 입실
-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성명, 나이, 학력 등 인적사항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 없이 면접 실시(블라인드 면접)
- 면접위원은 다음의 평가자료에 의하여 각 평가요소별 점수 부여

평가요소 (3개 분야 30점)	수		우		양		가
	A <sup>+</sup>	A <sup>0</sup>	B <sup>+</sup>	B <sup>0</sup>	C <sup>+</sup>	C <sup>0</sup>	D
①전문지식·기술과 응용능력(10점)	10	8.5	7	5.5	4	2.5	1
②창의력·의지력, 발전가능성(10점)	10	8.5	7	5.5	4	2.5	1
③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10점)	10	8.5	7	5.5	4	2.5	1

② 제2단계 면접(개별면접)

- 면접위원에게 인성 또는 적성검사 결과 자료 배부
- 응시자는 명찰(성명 및 수험번호)을 패용하고 입실
-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성 또는 적성검사결과 등의 자료와 응시자에게 질문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은 다음의 평가지표에 의하여 각 평가요소별 점수 부여

평가요소 (2개 분야 30점)	수		우		양		가
	A <sup>+</sup>	A <sup>0</sup>	B <sup>+</sup>	B <sup>0</sup>	C <sup>+</sup>	C <sup>0</sup>	D
①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20점)	20	17	14	11	9	6	3
②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10점)	10	8.5	7	5.5	4	2.5	1

**붙임7**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2021년도 하반기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응시자 협조 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출입이 가능하며,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 시험장 내에서는 응시자간 안전거리 최소1.5m이상 유지하기
- 모든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해야함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해야함 (오전조 8:30분 / 오후조 13:30부터 시험장 출입 가능)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해당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
-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 지키기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리기
- 감염방지를 위해 시험장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휴지, 덧신 등)는 본인의 가방 등에 넣어 직접 가져가기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서식1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지1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cm×4cm)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	------	----	------

검 사 내 용

신장		cm		체중		kg	
시력		색신각		청력		혈압	
맨눈	좌: 우:	(색각)	정상	좌: 우:	청력	교정	좌: 우:
교정	좌: 우:						
안질환		이비인후질환		호흡기질환			
치아		신경질환		피부질환			
간질환		정신질환		혈청검사(매독)			
소화기질환		기타					
순환기질환							
비뇨기질환							
흉부X선검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결과	[ ] 합격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합격여부	[ ] 불합격	
	[ ] 판정보류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 ]안에 √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서식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검증 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021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소방청에서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법령상 의무이행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6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 제24조,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연구논문실적, 특허실적, 병역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등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기관	제공근거 및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국세청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소득, 납세사실 등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경력사항 사실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근무시간)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대학 등 학위 발급 기관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학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학위 취득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학위명, 학위번호, 취득일자, 전공명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자격증 발급 기관	- 임용령 제15조, 제42조, 시행규칙 제28조 - 자격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자격 취득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질병관리청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역 관리 -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대상자 유무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b>단, 채용후보자 등록 및 합격자 명부 관리를 위하여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채용 절차 종료 후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b>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채용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성 명 :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직인)



### 3. 코로나19 관련 참고사항

참고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



#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통근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차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참고 2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감염관리본부 콜센터

##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1 손바닥  
손바닥



2 손등  
손등



3 손가락 사이  
손가락 사이



4 두 손 모아  
두 손 모아



5 엄지 손가락  
엄지 손가락



6 손등 밑  
손등 밑



###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1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2 옷 소매로  
가리기



3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발행일 2019.11.5

**참고 3**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7-4판 기준

□ **사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관련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 (2020.3.4. 시행)

**참고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묻고 답하기**

Q1.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피로 및 마른 기침이고, 일부 환자는 통증, 코 막힘, 콧물, 인후통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경미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2.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CoV와 SARS-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 또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지게 되면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

Q4.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코로나19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어 증상에 따른 처치가 이루어집니다.
-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6.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